

# 시흥초등학교 학교규칙



시 흥 초 등 학 교

# 시흥초등학교 학교규칙

1999.04.01.	제 정
2002.10.08.	1차 개정
2004.04.16.	2차 개정
2005.03.17.	3차 개정
2006.02.10.	4차 개정
2006.03.14.	5차 개정
2009.02.17.	6차 개정
2010.02.14.	7차 개정
2011.12.19.	8차 개정
2013.10.01.	9차 개정
2015.04.09.	10차 개정
2016.03.18.	11차 개정
2017.03.16.	12차 개정
2017.04.06.	13차 개정
2018.03.16.	14차 개정
2022.05.24.	15차 개정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시흥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2.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교육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 제3조(교육목표)

시흥초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학교 교육 목표를 매년 학교 교육과정에 제시한다

### 제4조(명칭)

본교는 시흥초등학교라 칭한다.

### 제5조(위치)

본교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143길 15에 위치한다.

### 제6조(적용대상)

본 학칙의 적용대상은 시흥초등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으로 한다.

## 제 2 장 수업 연한·학년제·학기 및 휴업일 등

### 제7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초·중등교육법 제39조에 의하여 6년으로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자의 수업연한은 단축시킬 수 있다.

### 제8조(학년제)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 제9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구분한다.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하계휴가 종료일까지), 제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10조(휴무 및 휴업일)

① 본교의 휴무 및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
2. 하계·동계휴가 및 학년말 휴가
3. 개교기념일(5월 1일)
4. 학교재량 휴업일
5. 주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일휴업일
6. 단기방학(봄방학, 가을방학)등 자율 휴업일

② 제1항 제1호, 3호, 5호를 제외한 휴가기간은 수업일수를 확보한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하되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47조 1항)

③ 제1항 각호 외에 비상 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교육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47조 2항)

④ 휴업일이라도 필요가 있을 시에는 과제를 부과할 수 있다.

## 제 3 장 학급 편성 및 학생 정원

### 제11조(학급편성)

학급 수는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학급편성 기준에 준한다.

### 제12조(학생 정원)

본교 학생의 정원은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 제 4 장 교육과정·수업일수·수업운영·평가 및 졸업

### 제13조(교육과정 편성·운영)

- ① 학교·학년·학급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교육감이 제시한 ‘경기도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및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의 강조점을 반영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편성한다.
- ② 학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③ 교육과정은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 운영한다. 기본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안전한 생활(1~2학년)으로 운영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43조 1항)

### 제14조(수업 일수)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라 수업일수(출석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필요한 경우에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감축 할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지역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45조 1항)

### 제15조(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 인근학교와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 할 수 있다.
- 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이 규정과 관련하여 학교장은 교외 체험학습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16조(출결처리)

- ① 학생이 출석하여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 학교의 '연간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한다.
- ③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전염병 등
  2.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대회 및 행사참여
  3.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일수
  4. 현장체험학습 및 교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5.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일수(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함)
  6. 학부모 확인에 의한 생리 결석
  7.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7조(현장체험 학습 및 학교간 교환·교류학습)

- ① 학부모는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학생의 현장체험학습(이하 체험학습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본교의 방침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학교장 허가 교환학습 운영 방침>에 따라 진행되며 변경이 있을 경우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운영한다.

### 제18조(평가)

1.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10조)
2. 평가의 시기와 방법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 제19조(과정수료의 인정)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과정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 ②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정원 외 관리대상자가 재입학한 경우의 수료 또는 졸업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른다.

### 제20조(졸업)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 제 5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제21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① 본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대한 별첨 내용에 근거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 첨부한다.

### 제22조(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 평가위원회)

- 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인정을 위하여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 6 장 입학·재취학·전·편입학·유예 및 면제

### 제23조(입학자격 및 입학시기)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동장이 발행하는 본교의 취학통지를 받은 아동
- ② 조 기 입 학 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에 준 한 다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로 동사무소에 신고하여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동)
- ③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 제24조(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 ① 유예 또는 면제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28조에 의하여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 한 후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기타 제반사항은 초·중등 교육법 14조, 동법시행 제 28 조에 준한다.
- ④ 학생 안전 보장 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를 설치 · 운영한다.

㉠ 직무

가. 취학 및 입학 유예 등 신청 심의

나. 미취학, 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보호자 면담

㉡ 구성 및 임기

가. 위원장 - 교장(당연직)

나. 내부위원 - 교감, 당해연도 담당부장 및 담당교사

다. 외부위원 - 학교 전담 경찰관, 지역아동보호기관 관계자, 학부모대표

라.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 내부위원, 전문가는 당해 직위 재직 시 연임이 가능하며 학부모 위원의 경우 1년 연임할 수 있다.

㉢ 위원회 개최

가. 학교장이 개최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한다.

나. 개최시기 - 학기 시작 전 및 학기 시작 직후 유예 등 신청 심의를 위해 개최 단,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

1) (정기)1차 신청분 : 예비소집일 4일 전 ~ 예비소집일 전일 중 개최

2) (정기)2차 신청분 : 입학전일 심사를 원칙으로 하나 공휴일 등 학교 사정으로 부득이할 경우 신청 후 10일 이내에 개최할 수 있다.

3) (비정기) 미취학, 미입학 및 무단결석 아동 발생 시 보호자 면담 및 학기 중 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해 개최 가능하며 신청후 10일 이내에 개최한다.

㉣ 의결

가. 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 위원회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25조(출석 독촉·경고 및 통보)**

- ① 결석당일(1~2일) 담임교사는 유선으로 결석 사유와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  
결석(3~5일) 학교장(교사)은 수시로 보호자, 학생에게 유선 연락을 실시하여 출석독려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소재, 안전 확인), 학생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  
(학교 교직원, 읍·면·동 업무담당 직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실시)하여 출석 독려(학생  
과 유선 연락 병행)

-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학교장은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결석(6일) 학교장은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은 학생의 보호자에게 면담 요청

결석(7~8일) 결석 학생의 보호자가 면담에 응한 경우: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서 보호  
자·학생 면담, 면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결석(9일) 학교장은 결석 학생 현황을 정리하여 교육장에 보고

결석(9일 후~ 출석 시까지) 전담기구를 활용하여 무단 결석 학생 중 집중 관리 필요 대상을 정하고 월1회 이상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 및 출석 독려

- ② 학교장은 재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고, 독촉 후 2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 또는 2회 이상 독촉이나 경고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학생의 거주지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 및 미취학하는 때
2.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 당하는 때
3. 출국 아동 중 이민, 해외지사·재외공관 발령에 의한 전 가족 출국, 교육장 추천에 의한 예·체능 특기자 유학 등을 제외한 적법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

### 제26조(전입)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27조(전학)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장으로 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호자 동의 없이 학생의 전출을 시킬 수 있다.
- ③ 학생 전학 시 읍·면·동장(초)에 전입 예정교에 학생 전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28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①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의 심의를 통해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연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결석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②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을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장기간 국외에서 거주하는 아동에 대하여 ‘당해연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결석한 자’ 일 경우 정원 외 관리를 할 수 있다.
- ④ 출석 독촉을 위하여 학교장, 교육장, 교육감에 행정정보 공동 이용 권한을 부여한다.

### 제29조(재취학)

- ① 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일시적인 해외 거주로 인하여 유예 받은 자, ‘당해연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결석한 자’로 정원 외로 관리해 오던 자가 재·편입학할 때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이수인정

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이수인정하고 해당 학생의 학령에 맞는 학년에 재·편입학을 허용한다. 단 재취학 학년도 학교 수업일수의 2/3미만이 될 경우, 당해 학년도 재취학·전입·진급·졸업을 할 수 없다.

- ② 해외귀국 학생의 재·편입 할 경우에는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받은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와 국내 최종학교 재학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전 가족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제출서류 간소화하기 위하여 학교장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을 부여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를 제출 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교육법 시행령 제 19조의 규정)

## 제 7 장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 제30조(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 ① 제21조 규정에 의한 조기이수대상자의 조기이수의 인정평가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취학 시 학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교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 8 장 기타의 비용 징수

### 제31조(수익자 부담 경비의 징수)

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수학여행비, 특기적성교육활동비, 청소년단체 활동비, 급식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징수한다.

## 제 9 장 학생포상·생활규범·학생선도

### 제32조(학생포상)

- ① 학교의 장은 품행이 바르고, 근면성실하며 효를 실천하는 자, 선행에 있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 ② 포상의 종류 및 심사기준은 재학생 포상과 졸업생 포상으로 나누어 매 학년도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 제33조(생활규범과 학생선도)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지킬 『시흥초등학교 생활인권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 ②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시흥초등학교 생활인권 규정』에 준한다.
- ③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선도를 할 수 있다.
- ④ 학생의 선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결정한다.

## 제 10 장 학생자치활동 조직 및 운영

### 제34조(조직)

- ①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통하여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협의 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린이회를 두어 조직 운영한다.
- ② 전교어린이 회장 1명(6학년), 부회장 2명(5, 6학년 각 1명), 각 부의 부장 1인을 둔다.
- ③ 2~6학년 각 반에서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둔다.
- ④ 전교 및 학급 학생자치회 조직과 회장, 부회장 선출은 1~2학기가 시작되기 전 학기에 실시하며, 임기는 6개월로 한다.

### 제35조(운영)

전교어린이회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별도 『시흥초등학교 생활인권 규정』에 준한다.

## 제 11 장 학교 운영 조직

### 제36조(교직원)

- ① 본교에는 학교장, 교감, 보직교사, 교사 등의 교육공무원과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을 둔다.
- ② 전 항의 직원 이외 필요에 따라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보조교사 등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교직원의 정원은 법률에 의한다.

### 제37조(업무 조직)

교육활동을 돕는 업무 조직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제 3항 및 제 4항에 의거 정하며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 학교장이 위임을 받아 조직하도록 한다.

### 제38조(업무분장)

각 부서는 학교운영 계획에 의하여 업무를 분장한다.

## 제 12 장 교직원 복무규정

### 제39조(교직원 복무 규정)

교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복무 규정』 [시행 2020.10.20.][대통령령 제31118호, 2020.10.20., 일부개정],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업무 처리 지침』에 근거하여 복무에 관한 사항을 학교 실정에 적합하도록 규정하여 운영한다.

### 제40조(학부모 후원회)

학교의 교육활동을 돕기 위하여 학부모단체 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 13 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

### 제41조(학교규칙개정절차)

- ①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의 인가를 받아 이를 개정한다.
- 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 제42조(시행규칙)

기타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부 칙

- ① 이 학칙은 공포한 날 202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학교 규칙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 및 조기 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경기도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4731, 2013.02.26)에 따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방침】

- ①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학부모와 교원 대상으로 조기진급 등에 관해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③ 조기진급 등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 ④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⑤ 조기진급자 또는 조기졸업자의 개별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의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 제3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조기진급 할 수 있다. 단 적용학년은 학교여건과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설정한다.
-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5학년에서 조기졸업 할 수 있다.

#### 제4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제12조의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5학년에서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 제2장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 제5조 【선정시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4월 이내에 실시한다.

### 제6조 【선정대상자 기준】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①~③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①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즐거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중 만점의 95% 이상인 자
- ②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③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픽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7조 【선정절차】**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 ①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 추천
- ② 제6조(선정대상자 기준)의 기준 고려
- ③ 교무회의 사정(인사위원회)
- ④ 학교장 선정

## 제3장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 제8조 【학습방법】

학습방법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이수 해당 학년 담임 및 교과 전담 교사의 지도 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 【학습지원】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 제10조 【평가지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 진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 제11조 【이수교과목】

- ① 조기진급 대상자는 해당학년, 조기졸업 대상자는 5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②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평가에 의한다.

**제12조 【이수기준】**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조기진급·졸업·평가위원회의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 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만점의 80%를 넘어야 한다.

**제13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과목 이수는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 제14조 【환원조치】

- ① 조기진급자가 진급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환원 조치 대상자는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 제4장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제15조 【신청시기】** 제16조(선정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 【선정대상자 기준】**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①, ②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①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 제17조 【상급학교 전형 응시 자격 평가】

- ① 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 후 7일 이내에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 ②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③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6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 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만점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 ④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별도 평가에 의한다.

- ⑤ 상급학교 전형 응시 자격 평가에 통과되었으나 해당 학교 전형에서 불합격하여 타학교 전형을 위해 자격 평가가 필요하고, 해당 학기에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기 실시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 【상급학교 전형 응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19조 【조기졸업 인정】**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한다.

## 제5장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제20조 【구성】**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③ 교사는 업무담당부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평가 학년별 담당교사를 포함 한다.

**제21조 【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②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①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3조 【업무】**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 ②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 ③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 ④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 ⑤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 제6장 조기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 처리

**제24조 【업무처리】** 조기진급 등 대상자가 속한 학급의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리, 성적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5조 【성적처리】** 조기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졸업장

성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초등학교 6개년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졸업장을 수여함.

년 월 일

시흥초등학교장 ○ ○ ○

학교장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졸업장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초등학교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졸업장을 수여함.

년 월 일

시흥초등학교장 ○ ○ ○

학교장  
직인